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67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조은희 · 조승환 · 이만희
이성권 · 김용태 · 이인선
서명옥 · 신성범 · 강명구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틈탄 주변인의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 등 사법적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재산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치매환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와 돌봄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치매환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치매환자등 또는 그 후견인과의 계약을 통한 소유 재산의 수탁 및 관리
 2. 수탁 재산의 운용 및 이를 활용한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등의 지급 관리 및 지출 지원
 3. 경제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재산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조력
-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대상 재산의 범위, 지출 지원의 방법,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하여 후견 및 신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6(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의5에 따라 부동산을 수탁한 기관은 해당 부동산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대상임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등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임시 지급정지 및 확인) ① 수탁기관은 수탁 재산 중 현금 자산에 대하여 피해 의심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지급을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24시간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8(법률구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 맺은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민사소송 등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9(디지털 조력권 보장 등) ① 국가는 치매환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조력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하여 치매 친화적 사용자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10(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휴직 및 간병 휴식지원) ① 국가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돌봄 휴직 및 간병 휴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단기 보호 서비스를 포함한 간병 휴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가족 간병 수당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족 간병 수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종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5(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치매환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u> <u>1. 치매환자등 또는 그 후견인과의 계약을 통한 소유 재산의 수탁 및 관리</u> <u>2. 수탁 재산의 운용 및 이를 활용한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등의 지급 관리 및 지출 지원</u> <u>3. 경제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재산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조력</u> <u>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u>

<신 설>

<신 설>

용절차, 대상 재산의 범위, 지출 지원의 방법,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성년후견 등 심판 절차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하여 후견 및 신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6(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의5에 따라 부동산을 수탁한 기관은 해당 부동산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대상임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임시 지급정지 및 확인) ① 수탁기관은 수탁 재산

<신 설>

<신 설>

중 현금자산에 대하여 피해 의심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지급을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24시간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8(법률구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 맺은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민사소송 등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9(디지털 조력권 보장 등) ① 국가는 치매환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조력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지털 서비스에

<신 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 ②
(생 략)
<신 설>

대하여 치매 친화적 사용자환
경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
여야 한다.

제12조의10(치매환자 가족의 돌
봄 휴직 및 간병 휴식지원) ①
국가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돌봄 휴직
및 간병 휴식지원을 확대하여
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단기 보호 서비
스를 포함한 간병 휴식제를 운
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가족 간
병 수당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
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족 간병 수
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
사한 종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지급
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

<신 설>

5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의 제공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산관리 업
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은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재위
탁할 수 있다.